



Web Contents



2024년 05월 03일 10시 51분

자동차등록증 비치의무

2023.07.27 조회수 70 등록자 윤남귀

자동차등록증을 차량 내 비치해야되나 싶어서 검색 중에 여기까지 왔습니다.

홈페이지 사업소안내 - 기본사항안내 탭을 보시면

자동차등록증을 차량 내에 반드시 보관하여야 한다고 적혀있고
과태료부과기준까지 안내되어 있는데요..

찾아보니까 자동차관리법 제18조 제1항에서 규정했던 상기내용은 법개정으로 삭제된지 8년이 됐군요.
그 페이지의 최종 업데이트가 21년 8월로 나오는데,
자동차등록사무소에서 일반대중을 상대로 정보를 제공하면서
업데이트 당시 기준으로 6년 전에 삭제된 규정을 가지고 잘못된 안내를 하는건 문제가 있어보이네요.
"자동차등록사무소" 홈페이지인데 말이죠.
시정조치 바랍니다.

[글쓰기](#)[목록](#)

이전글
번호판 무상교체 문의

다음글
건설기계-기중기운전면허 자격증 갱신

MokPo - Si
Web Contents

